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0. 31 선고 2021가단10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문경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03,258원, 원고 B, E에게 각 13,935,505원 및 이에 대한 2021. 8. 9.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고성군 F 전 1,16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1. 7. 23. 접수 제 127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A에게 54,331,829원, 원고 B, C에게 각 36,221,2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소외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8. 7.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J병원에 입원한 뒤 바로 그다음 날인 8. 8. 02:40경 사망하였다.
- 2) 망인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로 당시 별거 중이었던 원고 A, 자녀로 원고 B, C이 있었다.
- 3) 피고는 망인과 교제하던 사람으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한 간병을 맡고 있었다.

나. 망인의 사망 전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망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F 전 1,1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자로 매매대금 18,400,000원, 계약금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1. 7. 23. 접수 제 1271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의 망인 명의 예금 인출

1) 피고는 2023.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26 사기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공소제기되었다.

2)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2021. 8. 9. 09:17경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K조합 마산역지점에서 망인 명의로 ‘48,774,268원’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게 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12:27경 M조합에서도 망인 명의의 ‘70,000,000원’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뒤 마찬가지로 이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L조합 직원들을 기망하여 망인 명의의 K조합 마산역지점 예금 48,774,268원을 소외 N 명의 예금계좌로, M조합 예금 70,000,000원을 피고의 오빠 O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3)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23. 10.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되었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로서, 피고가 망인 명의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한 뒤, 매매대금 18,400,000원의 입금내역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무효인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6. 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그 법률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1. 7. 2. 당시 망인의 인지기능 저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소외 P은 법무사 Q 사무소 사무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작성일인 2021. 7. 2.경 부동산등기를 의뢰받아 망인이 있는 경남 고성군 농장을 찾아가 매도인인 망인을 직접 만난 뒤 신분증과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③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21. 7. 2. 14:19경 R조합 구만지점에서 현금 20,000,000원이 인출된 다음, 약 3분 뒤인 같은 날 14:22경 현금

18,400,000원이 같은 지점에서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현금 인출 및 입금 거래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스스로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망인 명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이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일부인 18,400,000원을 다시 입금하게 하였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 내지 현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현금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금전지급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 계좌에서 2021. 8. 9. 48,774,268원 및 70,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예금을 N 등에게 교부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위 예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한 이후인 2021. 8. 7. 16:54경 이 사건 예금 계좌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예금 계좌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망인 사망 당일인 2021. 8. 8. 10:08경부터 10:25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망인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54,331,829원{= 126,774,268원(= 48,774,268 + 70,000,000 + 8,000,000) × 배우자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게 각

36,221,219원(= 126,774,268원 × 직계비속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48,774,268원 계좌이체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2021. 8. 9. 09:17경 지인 S에게 부탁을 하여 K조합 마산역지점에서 망인 명의로 예금 잔액인 ‘48,774,268원’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게 한 후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예금을 소외 N 명의 L조합계좌로 이체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48,774,268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망인 동생인 소외 T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돈을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전체를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사실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계좌이체 당시 망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권한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예금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합계 66,735,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가 2018년부터 망인에 대한 간병을 해오면서 간병인 노임 상당의 채권도 있었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위 채무도 각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채권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노임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상계로 불법행위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이유 없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중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년금제1641, 1642 형사공탁으로 피공탁자를 원고들로 하여 함께 48,774,268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위 공탁이 원고들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70,000,000원 계좌이체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48,774,268원에 대한 청구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2021. 8. 9. 12:27경 M조합에서 망인 명의로 70,000,000원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게 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조합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 예금을 소외 피고의 오빠인 O 명의 L조합계좌로 이체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70,000,000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70,000,000원은 망인과 피고의 오빠이자 망인의 지인이기도 한 O 사이에 망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U빌라 V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O이 망인 명의 계좌로 2021. 8. 9. 12:18경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다시 O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망인의 종전 예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예금거래내역서), 을 제19호증(예금계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70,000,000원은 2021. 8. 9. 12:18경 O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O 명의 L조합계좌'라 한다.)로부터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9분 뒤에 다시 O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이 비록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위 돈을 계좌이체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 주장처럼 O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입금되었던 70,000,000원을 매매계약이 무산되면서 입금 당일 다시 O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망인의 O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8,000,000원 현금 인출 내지 계좌이체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입원 이후 2021. 8. 7. 16:54경 이 사건 예금 계좌에서 피고의 예금 계좌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망인 사망 당일인 2021. 8. 8. 10:08경부터 10:25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4호증, 15호증의 1, 2, 33호증의3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금액 상당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8,000,000원 현금인출 내지 계좌이체 사실이 포함된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 2022년 형제7329호 횡령 피의사건에서 검사는 2023. 1. 1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위 부분에 대한 불기소이유로 피고 본인에 대한 계좌이체 3,000,000원 부분은 망인의 묘지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현금인출 5,000,000원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② 을 제14호증, 15호증의 1, 2, 33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입원 전인 2021. 7. 25. 간이침대 등을 구입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W 소재 X매장에 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망인 사망 이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Z사에 2021. 8. 14.경부터 망인의 49재를 올리면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AA에 묘지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피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990,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지출 명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의 위협의 없음 처분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20,903,258원(= 48,774,268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에게 각 36,221,219원(= 48,774,268원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세빈

별지